러시아 식자층의 농민 담론:
토지소유권과 농민공동체를 중심으로

기 계 형*

1. 서론

크림전쟁(1853-1856)의 참패 이후 후진적이고 지체된 러시아사회에 대한 각성과 함께 사회개혁과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공공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변화를 촉구하는 담론들을 통해 나타난 사회 초미의 관심사는 농노제 폐지의 문제였다.[1] 변화에 대한 사회 각 계층의 태도는 저자거리에서도, 게르쩬의 『종(Колокол)』지에서도, 귀족들의 살롱에서도, 법령편찬소위원회의 회의장에서도 표현되었으며, 그것은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나온 청원서들, 잡지들, 제안서들, 정부 훈령들, 개혁안들, 회의록들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표면상으로는 점잖은 논쟁 혹은 확고하고 공식적인 정부의 결정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욕설과 구타로 얼룩진 활극의 결과물로서 농노제 폐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 제 세력의 알력과 갈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무엇보다도 교육받은 계층의 농민 담론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홀(Stuart Hall)의 설명을 빌리자면, "담론이란 어떤 사회의 관계를 재현하는 특수한 방식"이다. 이때 담론은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 즉 특수한 집단이나 계급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지식을 생산하는 일군의 진술 또는 신념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담론은 이데올로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푸코(Michel Foucault)에 따르면 "세계에 대한 진리의 진술(과학)"과 "허위의 진술(이데올로기)"을 구분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물론 푸코는 무엇인가를 진리로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권력에 있다는 입장에 서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론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

* 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1) П. А. Зайончковский(1968) Отмена крепостного права, Москва, сс. 60-62; Л. Г. Захарова(1991) "Самодержавие и реформы 1861-1874 гг.,"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Люди, идей, решения. Россия на переломе*, Москва, сс. 293-325.

적이거나 순수하게 과학적일 수는 없지만 푸코는 담론을 단순히 특수한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진술들로 환원하기를 꺼린다. 오히려 담론을 통해 사회의 관계를 분명하게 재현할 수 있기를 제안하는 것이다.[2)]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식자층의 농민담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반란과 소요 이외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드물었고, 이 시기 농민생활의 실제와 그 변화의 잠재성에 대한 설명은 주로 식자층, 다시 말해 정부관리, 지주, 영지관리인, 반정부적 혁명가, 학자 등 제3자로부터 나오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그들 식자층은 한편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문화적 추측이나 정치논쟁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자유롭지 못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선입견은 농민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조명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의 연구경향과 일정부분 맥락이 닿아있다. 그동안 방대한 연구축적 속에서 원인, 과정, 결과 등을 비롯해 농노제 폐지의 다양한 측면들이 상당부분 해명되었다. 이러한 축적의 결과 농노제폐지에 관한 고정된 이미지, 즉 농노제폐지를 유발한 다양한 위기상황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제 연구자들은 농노제폐지를 유발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설명보다는, 농노제폐지 자체의 복잡성과 유동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주와 농민들의 구체적 경험, 그리고 개혁에 참가한 정부 관리들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집단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3)]

본 논문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식자층에서 이루어진 여러 담론들을 통해 농노제폐지의 개혁조치들이 덜 결정적이고, 매우 유연성이 있는 주제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논문에서는 사회적 담론의 핵심이 되었던 농노제폐지 문제 중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즉 농노제를 폐지한다면 농민에게 토지를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토지의 사적 소유권과 농민공동체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후반부터

---

2) Stuart Hall(1992) "The West and the Rest: Discourse and Power," Stuart Hall & Bram Gieben(ed.) *The Formations of Modernity: Understanding Modern Societies,* Cambridge, pp. 291-292.

3) 연구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기계형(1999) 「1861년 러시아 농업개혁 연구: 전통적 결론들과 최근의 몇 가지 새로운 경향을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24집, 171-203쪽.

1861년 농노제폐지 직전까지로 한정하여 경제학자들, 토지귀족들, 정부관리들, 사회활동가들과 관련된 청원서들, 훈령들, 회의록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토지소유권과 농민공동체 문제의 결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2. 토지소유권과 농민공동체에 관한 담론

2.1. 농민에 대한 식자층의 태도

> 시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 고상한 정열은 그의 관심 밖이라
>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가르쳐주어도
> 약강격과 강약격을 구분하지 못했고
> 심지어는 호메로스와 테오크리토스에게 욕을 해댔지.
> 그 대신에 그는 아담 스미스에 푹 빠져
> 어엿한 경제학자가 되었지.
> 즉, 국가의 부는 어떻게 증대하는지,
> 국가는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 그리고 '1차 산물'만 있다면
> 어째서 국가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지
> 등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었지.
> 아들의 이론을 아는 바 없는 그의 부친은
> 자꾸만 영지를 저당 잡히고 있었지만.[4]

뿌쉬낀은 『예브게니 오네긴』(1830)에서 아담 스미스를 읊조려야 멋있어 보일 정도로 고전경제학 이론이 사교계의 매우 인기 있는 담론이었다는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19세기 초에 정치경제학이 정식으로 대학 커리큘럼에 포함되면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담 스미스를 읽는 것은 널리 유행이 되었으며, 예컨대, 1807년 재무장관 바실리예프 백작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번역을 명령했고, 황실에서도 그것이 읽혀졌다. 뿌쉬낀은 바로 이러한 당시의 유행을 『예브게니 오네긴』의 주인공에게 그대로 투영했던 것이었다. 이처럼 대다수의 러시아 식자층은 서유럽의 다양한 사상적 조류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런 면에서 그들은 서구의 다양한 선진적 사상조류의 향유자들이었다.

---

4) 알렉산드르 뿌쉬낀(1999) 『예브게니 오네긴』, 석영중 역, 서울: 열린책들, 19-20쪽.

그렇지만, 서구의 선진적 사상조류들은 러시아라는 공간에서 매우 다르게 읽혀졌다. 특히 식자층 대부분이 농노를 소유하는 지주였다는 특성으로 인해 서구사상과 이론들은 매우 기묘하게 변형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실 아담 스미스의 저작이 러시아에 알려진 것은 뿌쉬낀의 시대보다 오래 전으로, 예까쩨리나 여제의 통치시대에 창설된 '제국자유경제회(Императорское Воль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안에는 이미 아담 스미스의 논의나 케네(Francois Quesnay)식의 중농주의를 수용할 서구추종자들이 포진해 있었다.[5] 그리하여 그들은 적어도 원칙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그 논의를 수용했다.

즉, 러시아의 초기 서구주의자들은 천부의 자연권으로서 생명, 자유, 재산권을 주장한 존 로크(John Locke)의 영향을 받아 가치의 원천으로서 노동을 강조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경쟁을 촉구한 아담 스미스나, 경제적 인센티브와 생산성의 증가가 자유로운 사적 소유권과 투자에 달려있다는 중농주의의 논의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영주의 자의적 권력이든 농민의 공동체적 토지사용이든 모두 러시아의 경제적 진보에 방해된다는 점은 수긍하였다. 그리하여 모스크바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의 경우, 영국식 처방의 연구를 통해 확고부동한 소유권의 부재는 경제적 후진성의 징후이자 원천이며, 개인 재산의 자유로운 이용권은 러시아 향후의 진보와 번영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비록 원칙적으로나마 개인적 자유와 사적 소유권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현실에서는 농노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로서 그러한 자유를 자신의 특권의 신장과 일치시키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6]

그 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세기 초 알렉산드르 1세 치세의 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농노제폐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대부분의 토지귀족들을 포함해 아담 스미스를 선전했던 경제학자들은 지주의 토지소유권을 강조함으로써 농노제폐지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19세기 초에 독일계의 러시아경제학자들인 야곱(Gustav von Jakob), 스톨치(Heinrich von Storch), 슐레처(Schlözer) 등은 프로이센식의 정치경제학을

5) 제국자유경제회의 설립과 그 장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 Atkinson(1980) "The Library of the Free Economic Society," *Slavic Review*, vol. 39, No. 1. pp. 97-103.

6) P. Cledenning(1972) "Eighteenth-Century Russian Translations of Western Economic Works,"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vol. 1, pp. 745-753; Esther Kingston-Mann(1991) "In The Light and Shadow of the West: The Impact of Western Economics in Pre-Emancipation Russia," *Comparative Study of Society and History*, vol. 33, no. 1, pp. 86-89.

러시아에 소개했는데, 스톨치의 경우 공동체적 권리의 폐지가 바로 경제발전의 예라고 주장하면서도 러시아농노의 즉각적인 해방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희망"이라고 밝혔는가 하면, 슐레처는 농노를 자본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경제학자 야곱은 1809년 스뻬란스끼가 주도하는 개혁에 참여했을 때, 농민보유지를 즉시 지주의 사적 소유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전통적인 농민보유지마저도 자신의 소유권으로 굳히고자 했던 토지귀족의 논리를 정당화 해주었다.[7] 그 후 니꼴라이 1세의 치세에도 서구의 경제이론, 서구식 처방으로부터 유용한 교훈을 얻으려는 상황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황제 자신은 이른바 전제정, 러시아정교, 민족주의라는 정책기조와 자신의 억압적인 정치체제의 모델로 프로이센을 상정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184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영주적 지배와 연결시키기 보다는 인신의 자유문제로 부각시키는 식자층이 러시아 사회에 출현했다는 사실이었다.[8]

그 집단 가운데 벨린스끼(В. Белинский), 그라노프스끼(Т. Грановский), 젊은 게르쩬(А. Герцен)과 같은 서구주의자로 알려진 비평가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농노제, 전제정, 정부검열, 그리고 국가의 억압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농민공동체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태도가 나타났다. 19세기 중엽 당시 인구에 회자되었던 농민공동체 문제는 특히 슬라브주의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는 했으나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9] 즉, 그라노프스끼는 역사에서 사유재산권과 농민공동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주목하면서 사유재산권이 보다 높은 역사발전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까벨린(К. Кавелин)의 경우는 사유재산권에 대해 좀더 회의적이었으나 농민공동체에 대해서는 덜 비판적인 사람에 속했다. 까벨린은 지주경제와 농민경제를 모두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주와 농민 모두의 토지소유권을 주장

---

7) E. Kingston-Mann(1999) *In Search of the True West: Culture, Economies, and Problems of Russian Development,* Princeton, pp. 9-33.

8) D. Offord(1985) *Portraits of Early Russian Liberals: A Study of the thought of T. N. Granovsky, V. P. Botkin, P. V. Annenkov, A. V. Druzhinin, and K. D. Kavelin*, Cambridge, pp. 9-25, 44-78, 175-213.

9) 알렉산드로프에 따르면, 농민공동체에 대한 폭발적 관심으로서 1856-1860년에 99편, 1860-1880년에 546편의 글이 이 주제를 조명하였고, 19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에 2천여 편의 단행본 및 논문들이 발행되었다고 한다. В. А. Александров(1976) *Сельская община в России (XVII-начало XIX в.)*, Москва, с. 3.

했다. 즉, 정부는 지주를 위해 농민의 인신과 토지에 대해 모두 보상해주고, 농민을 위해 반드시 농민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자유의 부재와 소유권의 부재가 농민을 "인간 이하"의 어떤 존재로 만든다고 믿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했다는 점이었다.[10]

이 시기 러시아의 식자층은 농노제폐지의 정당성을 밝힐 때 상당부분 계몽주의적 가치에서 단서를 얻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벨린스끼와 게르쩬과 같은 서구주의자들에 따르면, 농노는 인신적 해방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이성적일 수 있고 무지함과 편견을 버릴 수 있었다. 특히 벨린스끼는 역사의 본질은 진보에 있고 진보는 인간의 개인화와 사회의 합리화의 신장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더욱 광범위하게 서구화를 받아들이도록 주장할 수 있었다.[11] 한마디로 농민은 "계몽과 서구문화의 과실"을 얻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인간, 진정한 러시아인이 된다는 것이었다.[12] 이처럼 계몽주의적 시각에 기초해 농민들을 야만적인 농노제와 농촌생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자는 것이 19세기 중엽 농노제폐지론자들의 공통적인 주제였다.

다른 한편, 농민공동체의 일정 기능을 주목했던 일단의 경제학자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킹스톤만의 연구에 따르면, 일단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권이 경제적 이니셔티브와 높은 생산성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1848년 혁명과 국내의 소요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주로 체제유지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보편적인 자유권이나 사적 소유권에 의해 만들어지는 힘, 조화, 부에 관한 논의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의 안전, 국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록 "경제적으로 역행" 할지라도 농민공동체에 의존하는 쪽을 택했다. 예컨대, 까잔 대학의 마슬로프(Е. Маслов)는 농민

---

10) П. А. Зайончковский(1968), сс. 88-91; А. Л. Шапиро(1993) *Историография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1917 года*, СПб., сс. 397-418. 1860년대의 개혁과정에서 까벨린의 입장에 대한 국내연구로 다음을 참조. 임영상(1988) 「K. D. 카벨린과 사회개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sther Kingston-Mann(1991) "In The Light and Shadow of the West: The Impact of Western Economics in Pre-Emancipation Russia," pp. 99-100.

11) A. Walicki(1977) "Russian Social Thought: An Introduction to the Intellectual History of Nineteenth-Century Russia, *Russian Review*, vol. 36, No. 1, pp. 11-13.

12) Esther Kingston-Mann(1991) "Breaking the Silence: An Introduction," Esther Kingston-Mann & Timothy Mixter(ed.) *Peasant Economy, Culture, and Politics of European Russia, 1800-1921*, Princeton, p. 5.

공동체가 훨씬 진보적이고 생산적인 소유권 형태에 길을 내줄 것이라는 주장을 담아냈다. 그와 달리 어떤 학자들은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민공동체의 보존이 아니라 영국식 처방을 강조하였다. 정부정책에 관여하기도 했던 콩트주의적 경제학자 베르나드스끼(И. Вернадский)는 콩트(A. Comte)의 사상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사상이나 사적소유권의 보장이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혁명적이지 않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영국식 경제모델이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농민공동체적 관습이나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염두에 둔 주장이었다.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에 까벨린은 농민공동체를 공공연하게 비판하는 부류는 다름 아닌 경제학자들이며, 아울러 농민공동체가 자신들의 통치나 지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농노소유주들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13]

이처럼 토지소유와 농민공동체에 대한 식자층의 지배적 담론은 아카데미즘에 머물고 있든 간에, 혹은 좀더 실천적 차원에 있든 간에 아직은 결정적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부르주아지 세력의 발전이 미약하고 사회계층이 미분화된 당시의 신분제적 사회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자층의 지배적 담론은 주로 토지귀족의 소유권을 강조하였으며, 농민공동체가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안전과 질서의 문제에 대한 고려 때문에 소유권과 정치적 자유를 농민층과 결부시키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크림전쟁 패배의 비보가 알려졌을 때, 우선적으로 러시아의 제반 문제를 수습하는 것은 짜르정부의 몫이었다.

2.2. 초기의 정부훈령에 나타난 원칙들

파리강화회의 이후 짜르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인도주의적 개혁사상"의 영향을 받은 정부의 선택이라는 자유주의적 평가에서부터 "혁명적 상황의 부산물" 또는 "전제정의 사회적 분장술(make-up)"이라는 레닌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적어도 한계는 있으나마 이 시기에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즉, 정부는 공공의 불만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고, 농노제를 존속시킨 상태에

13) Esther Kingston-Mann(1991) "In The Light and Shadow of the West: The Impact of Western Economics in Pre-Emancipation Russia," pp. 90-100.

서는 러시아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논의의 초점은 어느 시점에 토지소유권과 농민공동체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는가의 문제라 하겠다.

우선, 1856년 3월 30일 파리강화회의 직후 알렉산드르 1세는 모스크바 귀족 단장들 앞에서 개혁의 의사를 밝혔다. 즉, 그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표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불행하게도 농민과 지주 사이에 반감이 존재하며, 그 때문에 이미 지주에 대한 반항의 사례들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조만간 이것(개혁-필자 주)을 향해 갈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개혁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보다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14]

그 후 짜르정부는 1857년 1월, '농노의 생활개선 조치의 토론을 위한 비밀위원회'(이하 비밀위원회로 약칭함)를 열어 개혁의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농노제 폐지에 관한 짜르 정부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는 1857년 11월 20일에 가서야 이루어졌다.[15] 1857년 봄 농노제폐지에 대한 황제의 의사표명에서부터 1년 반에 이르는 이러한 공백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지주들의 완강한 저항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분명한 예는 1857년 3월 초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의 지주들이 정부에 제출한 2건의 청원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원서의 이름은 농민문제의 개선안(положение)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그것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누려왔던 토지소유권과 영주권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일 따름이었다.[16] 청원서를 받은 뻬쩨르부르그 주의 주장관 이그나쩨프는 이 안은 "결코 농민의 상황을 개선할 수

14) В. А Федоров, ред.(1994) *Конец крепостничества в России. Документы, письма, мемуары, статьи*, Москва, с. 85. 이것은 농노제 폐지의 간행사료집으로 매우 유익하다.

15) 1857년 1월 3일, 짜르를 의장으로 하는 '비밀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비밀위원회의 위원들은 상당부분이 국무회의(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의원에서 충원되었다. 비밀위원회의 총 14명 위원 중 10명이 과거에 데까브리스뜨 운동과 관련되어, 7명은 데까브리스뜨 반란의 진압과 취조를 맡았으며, 2명은 젊은 시절에 '북부연맹'에 참여했고, 1명은 데까브리스뜨 반란을 연구한 바 있다. 비밀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П. А. Зайончковский(1968)의 2장; Л. Г. Захарова(1984) *Самодержавие и отмена крепостного права в России 1856-1861*, Москва. сс. 20-25를 참조.

16) Г. С. Койстинен(1953) *Проведение крестьянской реформы в Петербургской губернии*, Дисс. канд. ист. наук, Ленинград. сс. 78-92.

없다. 비록 간접적으로나마 승인을 허락하지만 그것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쓰지 않을 수 없었다.[17] 흥미로운 사실은 농노해방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지주들의 청원서가 당시의 다급한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내무대신 란스꼬이는 지주들의 개선안이 농노제폐지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지만 서둘러 비밀위원회로 보냈다. 그는 어쨌든 이것이 "다른 주의 귀족들을 위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며, 많은 곳에서 모방을 부추길 것"이라고 계산하면서, 서둘러 상부 기구(즉, 비밀위원회)의 결정을 재촉하였던 것이다.[18] 토지귀족들은 사회 전반에 퍼진 농노제 폐지의 여론에 접하면서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애썼던 것이고 당연히 현상유지 혹은 현상강화에 불과한 주장이었으나 정부는 이것을 농민문제의 해결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표된 2개의 훈령은 정부가 농민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각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개혁안 구성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1857년 11월 20일에 나지모프훈령(리뚜아니아 주)과 12월 5일 이그나찌예프훈령(상뜨 뻬쩨르부르그 주)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훈령이 내려졌다. 짜르정부는 농노제 폐지를 리뚜아니아 지역에서 먼저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기왕에 1850년대 중반에 새로운 토지조사(инвентарь)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있었고, 토지조사를 앞두고 지주들이 농노제 폐지 문제에 대해 좀 더 온순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계산했던 것이다.[19] 정부는 훈령과 함께 내무대신의 시행지침을 첨부하였고, 훈령에는 주로 주귀족위원회의 구성, 6개월 이내의 기한, 개혁안 작성 등의 일반원칙이 포함되었다.

나지모프 훈령은 결코 농민의 토지소유권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지주들로 하여금 농민문제를 논의하도록 촉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20] 나지모프 훈령의 요체는 첫째, 지주의 토지소유권을 보존하는 동시에 농민에게는 농가와 그에 딸린 텃밭(가옥 및 부속지)을 소유

17) 같은 책, c. 106.

18) РГИА, ф. 1291, оп. т. 1, д. 1, "Проект положения и переписка о поземельном устройстве крестьян СПб. губернии 1857-1859 г." л. 4-4об.

19) П. А. Зайончковский(1968), с. 82.

20) "Рескрипт от 20 ноября 1857 г. Александра II виленскому, гродненскому и ковенскому военному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у В. Й. Назимову," в кн. В. А Федоров, ред.(1994) *Конец крепостничества в России. Документы, письма, мемуары, статьи*, сс. 85-87.

하고 매입할 권리만을 부여하고 경작지, 방목지, 목초지 등(여타의 분여지)에 대해서는 용익권만을 허용한다.[21] 둘째, 세금, 병역차출, 재판권을 수행했던 지주들의 영지는 이제는 짜르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도록 촌락으로 나뉘며 지주들은 자신의 영지에 대한 감독권을 유지한다. 그리고 모름지기 농민으로부터 세금징수가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22] 리뚜아니아 지역에는 원래부터 농민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나지모프 훈령에서는 단지 "농민층은 촌(сельское общество)으로 나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촌에 대한 언급과 토지귀족의 "영주권을 보존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정부가 농민층을 사회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간주하고 그들을 새로운 지방행정단위 "촌"에 묶어 놓고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그나찌예프(П. Н. Игнатьев) 훈령과 그에 첨부된 내무대신의 지침에는 일반원칙과 함께 세부원칙이 부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3] 세부원칙에서는 첫째, 농민들에게 1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농촌 거주지에서 이주 및 유랑을 예방하기 위해" 가옥 및 부속지만을 매입에 의해 소유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으며, 이때 매입금의 액수는 가옥 및 부속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지방의 부업소득과 그 장소의 편리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함으로써,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농민의 생계보장과 정부와 지주에 대한 의무 이행을 위해 농민에게 주어지는 여타의 용익지의 면적은 그 지방의 조건과 관습에 따라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다.[24] 아울러 지침에서 정부는 특히 농민공동체 미르에 대한 보존방침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즉, **"예전의 농민공동체 제도를 파괴하지 않으며,"** (이하 강조 - 필자) "빈번한 토지재분배와 토지의 세분화를 허용하지 않도록" 애쓰면서, 각 가족에게 분여지의 용익권을 보존해 주어야 하며, "농민가족이 개별적으로 매입을 할 때, 그 가족은 매입한 가옥 및 부속지와 함께 **농민공**

---

21) 농민의 가옥 및 부속지(усадьба)란 보통 농민의 가옥, 부속건물(즉, 헛간, 외양간), 양배추밭, 과수원, 감자밭, 삼밭 등을 포함한다(상뜨 뻬쩨르부르그 주에서는 보통 감자밭 대신에 보리밭이 들어가기도 했다). 들의 분여지 혹은 여타의 분여지에는 경작지, 목초지, 방목지, 황무지가 포함된다.

22) В. А Федоров, ред.(1994) "Отношение министера," с. 90.

23) РГИА, ф. 1180, оп. т. 15, д. 2, Проект отношения Министра ВД к СПб. военному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у. лл. 72-78.

24) РГИА, ф. 1180, оп. т. 15, дело 2, лл. 72-74.

동체의 성원으로 남고, 농민공동체의 재도와 행정의 모든 조건에 복종한다." 그리고 "**농민이 부여받은 용익지는 영원히 농민공동체의 관리아래 남아 있어야 하며, 그것의 변경은…농민공동체의 동의가 아니면 허가할 수 없고**, 새 법령에 기초해 구성될 군관청의 특별 승인이 있어야만 허용된다. 아울러 농민들은 촌락(мирское общество)으로 나뉘어야 한다. 농민공동체 문제의 담당 및 재판은 지주의 관찰과 승인 하에서 농민공동체의 촌회, 그리고 농민으로 구성되는 농민공동체의 미르법정에 맡겨진다."[25]

앞에서 보았듯이 이그나찌예프 훈령에서 우리는 초기에 정부의 분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특히 농민에게 가옥 및 부속지에 한정해 매입을 통한 소유권을 부여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농민의 이주나 유랑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 안전의 유지라는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다. 아울러 농민공동체는 농민에 대한 하나의 통제방식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미 처음부터 분명히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토지소유권과 농민공동체에 대한 사회의 반응

3.1. 주귀족위원회의 개혁안

1858년 1월 14일 이그나찌예프 훈령에 따라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에서 귀족위원회(Губернский дворянский комитет)가 발족하였다. 그동안 짜르정부와 주귀족위원회들 간의 갈등은 이미 에몬스(T. Emmons)와 필드(D. Field)의 선구적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해명되었는데, 특히 뜨베르 주의 자유주의적 귀족들에게 초점을 맞춘 에몬스에 의하면 지주들의 태도는 젠트리층의 자유주의 운동으로 해석되었다.[26] 하지만 자하로바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러시아 지역의 주귀족위원회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우세한 곳은 거의 드물었고 대다수를 차지한 토지귀족은 주로 농노제옹호론자였으나 주귀족위원회가 제출한 개혁안을 자세히 들여다 볼 때 데까브리스뜨, 뻬뜨라셰프스끼반란 가담자, 슬라브주의자, 서

25) 위의 사료, *лл.* 75-78.

26) 주귀족위원회와 정부의 갈등에 대해 다음을 참조. T. Emmons(1970) *The Russian Landed Gentry and the Peasant Emancipation of 1861*,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9-205; D. Field.(1976) *The End of Serfdom: Nobility and Bureaucracy in Russia, 1855-1861*, Cambridge, Mass.

구주의자, 자유주의자 등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구성원들이 포진해 있었다.[27]

이미 나지모프 훈령과 이그나찌예프 훈령을 통해 정부의 개혁의지가 공표되었으므로 '비밀위원회'는 '농민문제 중앙위원회(Главный комитет по крестьянскому делу, 이하 중앙위원회로 약칭)'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각 주에서 작성된 개혁안은 주장관을 통해 내무대신에게 전달되었고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로 넘겨졌다. 그리하여 훨씬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은 방대한 문서들이 '중앙위원회'에 전달되기 시작했다. 1858년 초부터 1859년 초까지 근 1년 동안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를 포함해 유럽러시아의 46개의 주귀족위원회는 개혁안 작업을 개시했으며, 4만 4천여 명의 토지귀족이자 농노소유자로서 전체 귀족의 약 40%가 개혁안 작업에 참여하였다.[28] 그리고 1년 반 사이에 유럽러시아 전역의 주귀족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로 발송한 개혁안은 46개가 아니라 다수파 안과 소수파 안으로 그 두 배가 되었으며 특별 의견까지 포함하면 그 조항들은 엄청난 숫자에 이르렀다.

동시에 각 주의 귀족들은 소수파와 다수파를 불문하고 자신들의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누구를 제압할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루트를 통해 수도에 전보와 파발꾼을 보냈다. 그 외에 훈령의 모호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각지의 주귀족위원회로부터 엄청난 편지와 질문이 쇄도했다. 한편, 지방에서는 토지귀족들이 중앙의 정부로부터 별도의 훈령을 기다리지 않고 주귀족위원회에서 토론한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출간하는 동시에 상호간에 욕설과 구타를 주고받는 활극이 벌어졌다. 예컨대 농민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견지했던 사마린(Ю. Ф. Самарин)의 경우는 지주들의 공격을 받았으며 그는 스스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다.[29]

특히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주귀족위원회 의장은 대지주이자 당시에 보수주의적 농노제옹호자로 알려진 주귀족단장 슈발로프(П. П. Шувалов)였고, 그 성원은 대부분 대지주이거나 정부 고위직에 봉직하는 귀족들에게서 충원되었다. 다른 주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의 귀족위원회는 농노제를 옹호하는 보수적 성

27) Л. Г. Захарова(1991) "Самодержавие и реформы 1861-1874 гг.,"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Люди, идей, решения. Россия на переломе*, Москва, с. 298.
28) 같은 책, с. 305.
29) Л. Г. Захарова(1984), с. 57.

향의 의원이 지배적이었다.[30] 문제들을 논의할 때 자유주의 인사들의 영향력은 매우 미약했으며, 각 군의 귀족단장회의에서 뽑힌 16명의 위원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선출된 8명의 후보위원 가운데 오직 2명, 즉 뻬쩨르부르그 군 출신의 대표 꼬르프(Ю. Ф. Корф) 백작과 올힌(А. А. Ольхин)만이 자유주의자에 속했다. 꼬르프 백작은 1861년 이후 분쟁조정관(мировой посредник)으로 활동할 정도로 농민문제의 해결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주 올힌 역시 농민들의 토지소유권과 매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으며 농민에게 기꺼이 토지를 분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31] 하지만 그들의 견해는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귀족위원회에서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귀족위원회는 1858년 11월 3일, 11개월 정도의 작업 끝에 특별 의견을 첨부한 개혁안을 내무대신에게 제출했다.[32]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에서 약 1년 동안 벌어진 회의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들은 역시 농민의 토지소유권과 농민공동체에 대한 문제였다. 대부분의 지주들은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주경제에 '해악'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으며, 오직 자유주의자 꼬르프와 올힌 만이 "농민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며 동시에 "지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귀족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33] 주귀족위원회는 지침에 정해진 6개월의 기한 내에 개혁안을 만들지 못하고 3개 월 가량 소강상태에 있다가 11월 초에 가서야 개혁안을 완성했다.

이처럼 토지귀족들이 지루하게 밀고 당기며, 오랫동안 결정을 번복하고 미루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비록 내부적으로 부식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노제의 근간이 얼마나 러시아 사회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토대가 여전히 토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예컨대, 노바야 라도가 군의 대표의원 리호닌(С. С. Лихонин)은 가옥 및 부속지의 '영구용익권'을 제안하였는데, 결국 농노제 시절처럼 농민들에게 가옥 및 부속지에 대해 용익

30) 예를 들어, 꼬셀레프는 사마린과 체르까스끼 공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랴잔 주의 주귀족위원회의 성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검은 색(농노제옹호론자) 14명, 붉은 색(자유주의자) 8명, 회색(양자 사이에서 가변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 5명." А. Корнилов(1905)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и крестьянского дела в России*, СПб., с. 209; П. А. Зайончковский(1968), с. 93에서 재인용.

31) РГИА, ф. 1180, оп. т. 15, д. 198, лл. 17-33.

32) РГИА, ф. 1291, оп. т. 1, д. 1, л. 176.

33) РГИА, ф. 1180, д. 198, лл. 29об.-31об.

권을 가지도록 하되 그 권리를 영구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매입의 해악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그의 생각에 매입은 농민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해 줄 수도 없으며, 지주들의 입장에서도 가옥 및 부속지를 주고 나면 영지의 중요한 일부를 잃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노동할 일손을 잃기 때문에 특히 지주들이 슬픈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견이 주귀족위원회의 다수파 입장이었다.[34]

거의 1년에 걸쳐 진행된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귀족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철저히 토지귀족들만의 이해관계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그들은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 즉, 1858년 2월, 그들은 농민에게 가옥 및 부속지의 용익권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35] 정부의 압력 때문에 간신히 가옥의 소유권만 부여하겠다고 결정하였다.[36] 주귀족위원회가 훈령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자, 정부는 황제의 승인을 받은 또 하나의 프로그램, 즉 농민에게 반드시 매입권을 허용해야 하며, 가옥 및 부속지란 "가옥 및 부속지에 설치된 모든 부속 건물들과 토지"로 정의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일종의 명령을 제시하였다.[37] 결국, 5월 초에 주귀족위원회 회의에서 지주들은 가옥 및 부속지에 대한 농민공동체의 매입을 허용하되 지주와 '상호동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과 함께, 가옥 및 부속지의 토지가격은 주귀족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승인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38] 특히 주귀족위원회는 농민들이 인신해방과 함께 토지를 버리고 농촌을 떠나지 못하도록 다음의 조항을 첨부했다. 즉, "농민들은 가옥 및 부속지를 매입하면, 여타의 분여지에 대한 용익 거부권이 없으며, 의무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이러한 조건에 기초하여, 만약에 농민들이 분여지의 일부를 거부하면 지주는 해당지의 회수권을 갖는다."[39] 또한 농민공동체는 분여지를 "어떤 구실로도 거부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 마땅히 일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73조)고 밝혔다.[40] 아울러 뻬쩨르부르그 주의 토지귀족들은 목초지, 방목지, 삼림을 농민의 분여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농민들이 전통적

34) РГИА, ф. 1291, оп. т. 1, д. 1, л. 235.
35) РГИА, ф. 1180, оп. т. 15, д. 25, л. 96.
36) 위의 사료, л. 97.
37) П. П. Семенов(1915) *Мемуары П. П. Семенова-Тян-Шанского*, т. 3, Петроград, с. 60.
38) РГИА, ф. 1180, оп. т. 15, д. 25, л. 112.
39) РГИА, ф. 1180, оп. т. 15, д. 195, лл. 28об-29об.
40) РГИА, ф. 1180, оп. т. 15, д. 25, л. 31.

으로 이용해 온 공동의 토지이용권을 침해했다. 아울러 농민들은 부역에서 화폐지대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6년 동안 부역을 바쳐야 하며, 부역에서 화폐지대로 전환할 권리는 지주의 판단에 맡겨진다. 의무는 농민의 연대책임으로 이행한다고 밝혔다.[41]

한편, 농민공동체 문제에 대한 지주들의 태도는 당시 보수적 입장의 이데올로그 베조브라조프(М. Безобразов)가 쓰고 짜르스꼬셀로 군의 대표인 쁠라또노프(А. П. Платонов)가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귀족위원회에 보낸 특별 메모에 잘 반영되어 있다. 농민공동체에 대한 지주들의 반응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것을 한편으로는 관료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와 일치시킨다는 사실이다. 베조브라조프는 특히 가옥 및 부속지의 매입은 지주와 농민을 동시에 몰락시키며 어느 누구의 생활도 개선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출발해, 농민에게 부여된 촌회와 농민들의 미르법정과 같은 제도는 짜르정부의 "관료주의 정신이 구현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즉, 그는 정부가 억지로 그것을 강요한다고 여겼으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주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의 계산에 따르면 농민들이 지주에게서 ⅔나 되는 토지를 가져가는 데도 불구하고, 지주들은 농민들에게 일하도록 명령할 만한 권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42]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농민공동체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을 가했다. 베조브라조프는 정부의 훈령에 제시된 농민공동체의 행정기능, 즉 지주의 영지를 촌락으로 나누고 개개의 촌락을 세금을 걷는 기본단위로 설정하는 원칙의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지만, 농민공동체의 토지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했다. 그는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고 수확하며, 토지공동체를 통해 공동으로 토지의 몫을 가지는 기능이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고 여겼다. 즉, 그는 그것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개시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고 썼다.[43] 아울러 베조브라조프는 1858년 3월 27일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귀족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생각을 재차 밝혔다. 그는 자신들을 "부패하고 무기력하며 비도덕적인 신분"이라고 비판하는 사회주의자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농민공동체의 행정과 경제적 기능의 성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촌락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도를

41) РГИА, ф. 1180, оп. т. 15, д. 195, лл. 59б.-60, л. 67.
42) РГИА, ф. 1291, оп. т. 1, д. 1, л. 161об.
43) РГИА, ф. 1291, оп. т. 1, д. 1, л. 161.

취하자고 호소하였다.[44] 그의 의견은 다수파의 입장으로 지주의 영주권을 강화하는 조항에 포함되었다. 베조브라조프의 주장 속에서 1848년 유럽혁명의 실패와 사회주의의 망령에 대한 토지귀족의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진보진영과 농민의 목소리

주귀족위원회에서 개혁안을 작성하고 있을 때, 농민들은 그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따라서 『종』지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농민 모두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토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농민입장을 대변하였으며 자신들을 농민의 대변자고 자처했다. 게르쩬과 오가료프의 『종』지는 처음부터 농민이 배제되었던 문제에 대해 호된 비판을 가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오직 귀족들의 대표만 있어, 농민의 이익을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기 때문"이었다.[45] 그리하여 『종』지는 개혁안 작업에서 농민의 목소리가 빠져있다는 점을 근본적 한계로 지적하면서, 정부가 한쪽에게만 말할 권리를 주었고, 이것은 결국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즉, "이러한 위원회들과 함께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농민은 참을성을 잃고 있으며 결국에는 끝장을 보려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전망하였다.[46] 그 후 『종』지는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귀족위원회의 성원, 결정, 토의 등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 자세히 실었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쌍방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치한다면 어느 한쪽만을 위해 내린 결정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고, 다른 기사에서는 위원회에 농민을 대변하는 농민 자신들의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였다.[47]

그리고 『종』지는 나지모프 훈령과 이그나찌예프 훈령의 주요원칙을 비판하였다. 즉, 지주에게 모든 토지소유권을 보존하면서, 가옥 및 부속지에 대해서만 매입을 허용하고 여타의 토지에 대해서 용익권을 준다는 내용 자체는 본질적으로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용익권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오가료프는 정부가 제시하는 농민의 용익권이란 "**의무적으로 영원히** 지주를 위해 일하도록…또는 화폐지대를 납부하도록 토지를 부여한 것"에 불

44) 위의 사료, л. 105об.
45) *Колокол,* No. 15, 15 мая 1858 г., с. 119.
46) *Колокол,* No. 35, 1 февраля 1859 г., сс. 289, 284-285.
47) *Колокол,* No. 14, 1 мая 1858 г., с. 110; No. 7, 1 января 1858 г., с. 54.

과하다고 판단했다(필자의 강조). 아울러 그는 이그나찌예프 훈령에 부가된 내무대신 지침 중 특히 2조 6항에 대해 비판을 가했는데, 앞으로 주귀족위원회가 이 조항을 이용해 "화폐지대나 노동일수를 늘리고 이것으로 민중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48] 나아가 『종』지는 주귀족위원회의 개혁안 작업에 대해 "귀족들이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농노제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49] 특히 부역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가했다. 왜냐하면 90일 동안으로 정해진 부역은 사실상 농노제의 기초이고 부역을 보존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농노제를 보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종』지는 "농민들은 새로운 농노제에 대해 또다시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50] 이러한 맥락에서 『종』지는 다수파 개혁안 가운데 가내농노에 관한 결정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예를 들어, 오가료프는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귀족위원회가 자신들이 봉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한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내농노의 인신에 대해 돈을 받겠다는 의미를 추악한 위선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다"고 호되게 비판했다.[51] 한편, 체르늬셰프스끼(Н. Г. Чернышевский)는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귀족위원회의 다수파의 개혁안에 삽입된 지주와 농민 사이의 "상호동의"라는 원칙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가 보기에 상호동의는 농민문제 해결의 기초가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유계약이 아닌 상황에서 상호동의라는 그런 조건은 순전히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매입조건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52] 체르늬셰프스끼는 농업개혁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즉 위로부터의 개혁이 지니는 한계를 직시하면서 곧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농민 역시 자신들 고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바로 1858년 4월말 에스토니아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반란으로 표현되었다. 정부는 이미 나지모프훈령과 이그나찌예프훈령을 통해 지역단위의 개별적 개혁안의 구성작업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지만, 1858년 초 시점에 이 훈령들이 정부의 개혁노선의 전체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중앙위원회'의 위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보수적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며, 정부의 개혁노선은

48) *Колокол*, No. 7, 1 января 1858 г., с. 54.
49) *Колокол*, No. 14, 1 мая 1858 г., с. 111.
50) *Колокол*, No. 30-31. 15 декабря 1858 г., с. 243.
51) *Колокол*, No. 35, 1 февраля 1859 г., с. 289.
52) Н. Г. Чернышевский(1948) *Избран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т. 2, М., с. 264.

보수주의적인 상층부 고위관료들과 자유주의적 계몽관료들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예컨대, '중앙위원회'에서는 치안을 위해 상뜨 뻬쩨르부르그와 모스크바를 포함해 몇몇 지역에 도입한 군총독(военный генерал губернатор) 직위를 러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시키자는 안건을 찬성하는 분위기와 아울러 특히 농노의 인신해방만을 포함한 개혁안건이 받아들여질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이나 하듯 자유주의자 까벨린(К. Д. Кавелин)의 논문을 게재한 『동시대(Современник)』 4월호가 판금조치를 당했다. 논문에서 까벨린은 농노제폐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농민이 가옥 및 부속지 뿐만 아니라 여타의 분여지 전체, 즉 모든 토지에 대해 매입을 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갖는 데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정부훈령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까벨린은 즉시 황제의 총애를 잃고 황태자의 스승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공식적으로는 농업개혁 준비작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었다.

바로 이 시점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사건이 터졌던 것이다. 농노제폐지의 원인을 농민반란과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의 투쟁에 의한 "혁명적 상황"의 부산물이라고 주장했던 일단의 소련학자들의 견해는 상당부분 수정이 필요하지만, 특히 1858년 봄의 농민반란은 정부의 개혁원칙을 수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사건은 나지모프훈령이나 이그나찌예프훈령에 공표된 "각 지역에 맞는 개혁안의 작성"이라는 정부 개혁정책의 기본원칙을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발트해에 접한 에스토니아 지역에서 1월부터 시작된 소요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반란으로 확대되자 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53] 황제는 4월에 육군 준장 이사꼬프(Н. В. Исаков)를 그곳에 보내 농민소요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사꼬프는 농민소요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신해방만 이루어졌던 1818년 당시의 조치들이 또다시 이 지역에서 되풀이될 것이라는 농민의 불만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그는 농민에게는 최소한의 생활개선이 아니라 "토지를 갖는 진정한 해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돌아왔다.

---

53) 에스토니아 반란에 대해 Л. Г. Захарова(1984), сс. 40-45; П. А. Зайончковский(1968), сс. 120-125. 그리고 19세기 중엽의 주기적 농민반란과 보드까 독점판매권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을 연관시켜 설명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오. D. Christian(1990) *Living Water: Vodka and Russian Society on the Eve of Emancipation,* Oxford, pp. 355-381.

소요는 곧 진압되었으나 짜르정부의 상층부진영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가 생겨났다. 정부는 우선 4월 15일과 4월 22일자 검열당국 회람을 통해 언론지상에서 농민문제에 대한 토론을 일체 금지하였다.[54] 마침 황실령농민에 대해서 인신해방만을 부여하려 했던 알렉산드르 2세는 몇 명에게만 개별적으로 그러한 자유를 부여했을 뿐 무토지해방 방침을 철회했다.[55]

그 후 정부의 개혁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향선회는 특히 1858년 10월과 11월에 이루어졌다. 농업개혁 연구자들은 보통 이러한 방향선회의 배경을 분석하면서 중앙위원회의 의원이자 시종무관(генерал-адъютант)인 로스또프쩨프(Я. И. Ростовцев)의 역할을 부각시킨다.[56] 짜르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던 그는 1858년 8월과 9월, 4차례에 걸쳐 기본적으로 무토지해방안에 반대하고 사실상 개혁의 목표에 자유주의적 성격을 부가하는 내용의 서신을 황제에게 보냈다.[57] 황제는 편지들을 면밀히 읽고 난 후 즉시 그 내용을 중앙위원회의 토론에 부쳤다.[58]

4. 농민문제의 결정: '단순함'과 '기존의 현실'이라는 논리

4.1. 새로운 정부프로그램과 법령편찬위원회

이제 초기의 훈령들과는 다른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1858년 12월 4일에 짜르의 최종 승인을 받음으로써 공식적인 성격을 얻게

54) Л. Г. Захарова(1984), сс. 31-33, 66-67.

55) 같은 책, сс. 45-48.

56) 알렉산드르 2세의 황태자시절 선생이기도 했던 로스또프쩨프는 1825년 12월 니꼴라이 황제에게 반란의 조짐을 밀고하고, 반란진압에 참여하여 훈장을 받았다. 1856년 말에 정치범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과 함께 시베리아에서 돌아온 데까브리스뜨들은 로스또프쩨프의 과거의 행적을 말하기 시작했고, 1858년 『종』지에서 그의 과거 경력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П. П. Семенов(1915), сс. 58-63; П. А. Зайончковский (1968), сс. 109-111; Л. Г. Захарова(1984), сс. 127-133.

57) В. А Федоров, ред.(1994) *Конец крепостничества в России. Документы, письма, мемуары, статьи*, сс. 166-170.

58) *Журналы Секретного и Главного комитетов по крестьянскому делу*(1915), т. 1, Петроград, сс. 298-299.

되었다.[59]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공식방침, 즉 "각 지역에 맞는 개혁안"을 포기하고 이제 러시아전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령"을 준비한다는 입장을 채택한 것이었으므로 반발이 클 것이 예상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공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유주의 성향의 관료들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길 사람들을 선택했다.

알렉산드르 2세는 1859년 2월 17일, 로스또프쩨프가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으며 중앙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서 법령편찬 소위원회(Редакционные Комиссии)가 구성되었다.[60] 3개의 부서(농업경제국, 법률국, 행정국)로 이루어진 법령편찬 소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해 총 39명의 의원(정부측 관료 출신으로 내무부 등의 여러 정부 부서와 관청의 대표 17명, 그리고 전문가 출신으로 농업문제 전문가 및 학자 21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모두 짜르의 이름으로 로스또프쩨프가 법령편찬 소위원회의 의원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사람들의 중심에 밀류찐(Н. А. Милютин)이 있었으며 그는 짜르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시의 자유주의 사회활동가 및 학자들과 협조해 새로운 개혁모델을 만들어냈다.[61] 그는 이 시기에 내무부 정책을 담당했으며(임시 내무부차관에 임명됨), 특히 농민에게 여타의 분여지 매입권을 주어야 한다는 구상은 까를로브까 안에서 밀류찐이 제시한 견해에 기초한 것이었다.[62]

법령편찬 소위원회의 의원들은 대부분 최고의 교육을 받은 토지귀족으로서, 특히 대지주와 고관대작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노제 옹호자나 대지주는 소수를 차지했다. 의원들 가운데 12명은 이미 '러시아제국지리협회

---

59) В. А Федоров, ред.(1994), сс. 165-166.

60) 밀류찐은 일찍이 까를로브까의 농노 해방안을 제시했다가 황제의 승인을 거부당한 바 있는데, 그후 까벨린과 체르까스끼 등을 비롯한 당대의 자유주의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그의 개혁안 준비 작업은 1858년 말까지 계속되었으며, 그것은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Захарова(1991), сс. 24-43; П. П. Семенов(1915), т. 3, с. 220.

61) Л. Г. Захарова(1983) "Записка Н. А. Милютина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крестьян,"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России XIX-начала XX века*, Л., с. 30.

62) 같은 책, с. 32-33. 까를로브까 안은 12월 27일에 중앙위원회에 제출되었고, 1859년 1월 26일에 중앙위원회의 토의를 거쳤으며, 법령편찬 소위원회의 설립 전인 1859년 2월 1일에 황제의 승인을 받았다. РГИА, ф. 1180, оп. т. 15, д. 36, лл. l. 9-36.

(РГО)'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의원들 대다수는 30대-40대의 비슷한 연령의 같은 세대의 사람들로서(그 점에서는 황제도 마찬가지이다) 당시에 널리 알려진 사회활동가들이었다. 정부측 관료에는 밀류찐, 주꼬프스끼(С. М. Жуковский), 솔로비요프(Я. А. Соловьев), 빠블로프(Н. Н. Павлов), 아라뻬또프(И. П. Арапетов)등이 참여했고, 전문가출신에는 따따리노프(А. Н. Татариов), 따르노프스끼(В. В. Тарновский), 쩰레즈노프(Н. И. Железнов), 골리쯴(С. П. Голицын) 등이 참가했다. 그리고 당시에 슬라브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사마린(Ю. Ф. Самарин), 체르까스끼(В. А. Черкасский), 그리고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세묘노프, 붕게, 레이쩨른, 자블로쯔끼-제샤또프스끼 등이 참여하였다. 위원회의 구성작업에서 밀류찐, 세묘노프, 꼰스딴찐 대공이 로스또프쩨프를 도왔다. 중앙위원회의 하부조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법령편찬 소위원회는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로스또프쩨프의 작업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직 짜르였고, 중앙위원회도 국무회의(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도 이 기구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법령편찬 소위원회는 3개의 국으로 나뉘어 법령안의 세부작업을 개시하였으며, 회의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63] 법령편찬 소위원회의 39명의 위원들 가운데는 자유주의적 견해의 인사들이 다수파를 형성했으나 보수주의적 토지귀족도 포함되었다. 예컨대, 농노제 옹호론자로서 보수적 토지귀족을 대표하는 상뜨 뻬쩨르부르그 주의 주귀족단장 슈발로프 백작은 상뜨 뻬쩨르부르그, 쁘스꼬프, 노브고로드 주를 대표하는 전문가 위원으로 선발되었다. 그는 애초에는 제외되었으나 고위관료들과 대토지귀족들의 압력 아래 법령편찬 소위원회에 들어왔고, 그 외에도 보수적 토지귀족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던 뽀젠과 빠스께비치 등이 위원에 포함되었다.[64]

1861년 농업개혁의 법령안은 법령편찬 소위원회가 발족한 1859년 3월부터 1860년 10월까지 1년 7개월 동안에 걸친 작업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법령편찬 소위원회의 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사회의 폭발적 변화는 정부의 위원회의 회의 양상과 회의록에 영향을 주었다. 즉, 위원회가 발족하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의 기초로 이용하기 위해 먼저 유럽러시아 전역의 토지소유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를 방대한 통계집으로 발간했다.[65] 위원회는 1년 7개월 동안에 409번의 회

63) Л. Г. Захарова(1984), с. 220.
64) П. П. Семенов(1915), т. 3, сс. 180-185.

의를 열었으며(이와 비교해 비밀위원회는 1857년에 11번, 중앙위원회는 1858년에 28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농민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에 착수하기 위한 도서관 설립을 제안하고 황제의 승인을 받아냈다. 위원회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진보세력의 반향을 확인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종』지를 구독했고, 프랑스혁명이나 프로이센 개혁에서 이루어진 농민문제의 해결방식을 연구하고 토론했으며, 더구나 회의의 결과는 즉시 회의록의 형태로 3천부나 발행되어 고위각료, 주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직급의 관리들과 귀족단장에게 배포되었다. 게르쩬과 체르늬셰프스끼도 그것을 입수하였으며, 이러한 출간물은 농노제폐지 전야 러시아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마르크스의 손에도 들어갔다. 법령편찬 소위원회는 자신들의 자유주의적 개혁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다시는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택했다. 위원회는 밀류찐의 지휘 아래 그 전례가 없다 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66] 어쨌든 1859년 가을에 이미 개혁의 주요 골격은 만들어졌으며, 그 후 1년의 기간은 세부법안을 작성하는 데 바쳐졌다.

4.2. 법령편찬소위원회의 최종적 개혁안

법령편찬 소위원회의 활동에서부터 1861년 2월 19일 법령에 황제가 서명하는 시점까지 식자층의 담론을 살펴보면 특히, 토지소유권과 농민공동체 문제가 매우 다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사회의 정치적 판도는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어느 때보다도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띠었다. 정부 최상층부의 고위관료, 계몽관료, 지방의 토지귀족, 진보적 지식인 집단 등의 정치진영은 농민문제에 대한 입장에 따라 보수주의적 농노제 옹호론자, 자유주의자, 슬라브주의자, 서구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매우 다른 이데올로기의 극단에 서거나 그 정체성이 서로 중첩되는 모습을 보였다.[67]

아래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토지소유권과 농민공동체 문제가

---

65) *Приложения к трудам Редакционных комиссий для составления положений о крестьянах, выходящих из крепостной зависимости Сведения о помещичьих имениях*(1860), т. I-VI, СПб.

66) Л. Г. Захарова(1984), с. 200.

67) Gary M. Hamburg(1991) "Peasant Emancipation and Russian Social Thought: The Case of Boris N, Chicherin," *Slavic Review* 50, no. 4, pp. 890-891.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추적해보기로 하자. 법령편찬 소위원회의 총무이자 서기였던 세묘노프의 회상에 따르면, 1859년 3월 초의 편찬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모두 공감했던 하나의 사실은 농민의 토지용익권을 훼손하면서 법령안을 작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68] 특히 4월부터 6월 사이에 농업경제국 회의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권 문제가 처음으로 확정되었다. 세묘노프는 농업경제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우리는 (…) 농민에게 완전한 사적 소유권을 부여하려고 애썼다 (…) 후에 우리는 그것이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그래서 우리의 일차적 과제는 (…) 바로 각 영지에서 농민과 지주의 토지의 경계를 영원히 분명하게 확정짓는 것이 되었다."[69]

그리하여 법령편찬 소위원회는 회의에서 농민에게 부여할 토지와 그에 대한 의무규정 문제를 면밀히 따졌다. 그리고 나지모프 훈령 등에 기초해 각 주에서 만든 주귀족위원회 개혁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가옥 및 부속지에 대해서만 매입권을 부여하는 것은 "농민들을 옛날과 다름없이 토지에 결박시키는 것이며, 그리하여 지주들은 매입을 빌미로 자신들의 상실한 부역의 권리를 농민들에게 다시 부과할 가능성을 얻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농민에게 분배할 농민분여지와 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으로서 매우 특별한 방법을 채택했다. 그것은 최대 및 최소 분여지 그리고 최대 및 최소 화폐지대라는 방안이었다.

당시에 이 문제는 슬라브주의자 사마린, 체르까스끼, 솔로비요프가 맡았다. 세묘노프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사마린은 우리 모두를 쉽게 납득시켰다. 즉, 농민용익지의 토질에 따라 농민의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수 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완전한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지금의 농업문제 해결에 있어 (…) 우리는 이미 채택한 기존의 현실이라는 원칙에 근거해 (…) 매우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의무제도(обязанная система)"를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른바 '기존의 현실'에 따르면, 지주는 농민들의 분여지가 법령에 의해 확정된 1인당 최대분여지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면적을 삭감할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만일 농민들의 분여지가 1인당 최저분여지의 면적에 미치지 못하면, 지주는 그 해당면적을 농민에게 추가해주거나 토지용익에 대한 의무를 줄여주어야 했다. 한편, 최대 분여지를 받은 경우 최대 화폐지대를 납부하며, 이는

68) П. П. Семенов(1915), т. 3, с. 220.
69) 같은 책, сс. 228-229.

농노제 하의 화폐지대를 초과해서는 안 되었다.[70]

이렇듯, 법령편찬 소위원회는 농노제 하에서 유지되었던 농노-지주간 관계를 의미하는 '기존의 현실들'을 법령안 작성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던 것이며, 최대 및 최소 분여지와 최대 및 최소 화폐지대의 방법을 통해 농민분여지의 면적과 그에 대한 의무가 확정되었던 것이다. 세묘노프의 회상에 따르면, 당시에 법령편찬 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방안은 단순함이 장점이라고 여겼으며, "기존의 분여지를 농민에게 영원히 그리고 변동 없이 확고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찬하였다. 위원들은 농업개혁의 시행을 쉽게 하려고 이 원칙을 고안한 것이었는데, 아울러 그들은 지주와 농민들이 서로 상호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러한 방안을 고안해내면서 "단순함"이 농업개혁의 시행을 손쉽게 해줄 것이라는 점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71] 1861년 농업개혁의 원칙은 이와 같이 최대 및 최소 분여지, 최대 및 최소 화폐지대라는 방안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법령편찬위원회는 특히 토지매입금 상환의 문제를 매우 자세히 규정하였다. '일반법령'에 따라 농민에게는 가옥 및 부속지에 대한 의무적인 매입과,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허용되었다. 그리고 지주의 동의로 농민은 자신의 생계와 정부 및 지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영구용익지로 받은 여타의 분여지들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러면 지주와 농민 사이의 모든 의무관계는 소멸된다.

다시 말해, 법령편찬소위원회는 농민들의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매입금 상환을 통한 토지소유권을 부여하였다. 상환은 무엇보다도 농민공동체에 기초하여 결정되었다. 세묘노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농민분여지의 매입은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동요 없이 정부측 의견에 찬성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총 10억 루블의 업무였다. 정부예산이 3백만 루블이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의 구세대의 재정가들은 매입금에 대한 상환 조치를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 하지만 우리는 부역이 조속히 사라지고 자유노동이 매우 빠르게 발전할 것이며, 농민에게 조속히 (…) 매입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 매입금 납부는 개별 촌락(сельское общество)의 연대책임으로 보장되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입사무의 시행을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72] 그리

70) '지방법령' 20-22조와 19조. *Документы крестьянской реформы*, сс. 258-260.
71) П. П. Семенов(1915), т. 3, с. 237.

하여 법령편찬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즉, 농민들은 유럽러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와 같이 토지재분배공동체의 영향아래 자신의 몫을 부여받는 곳이든, 또는 제국의 서부 및 남부의 몇몇 지역에서처럼 토지의 세습보유가 널리 퍼져있는 곳이든 모두 분여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들어가며,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라는 이름을 받는다. 그리고 농민분여지는 개별가족의 호주가 아니라 촌락공동체에 무기한 용익지로 부여하며, 나중에 촌락공동체에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첫째, 법령편찬 소위원회는 일단 농노제 폐지를 법령으로 공포하고 나면 미래의 토지관계는 그에 상응해 만들어질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즉, 법령에서 일단 농민에게 분여지를 매입하도록 권리를 명시하면, 결국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토지소유권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73] 둘째, 법령편찬 소위원회가 분여지 매입금의 상환 방식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농민공동체의 상호연대 기능이 세금징수를 보장해 줄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이다. 크림 전쟁의 패배 이후 엄청난 양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짜르정부는 무엇보다도 국유지 농촌에서 안정적인 세수(稅收)를 담보해 주었던 농민공동체라는 카드를 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법령에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미르의 결의(приговор)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토지 재분배공동체(община)라고 부른다. 그것은 등록농민(душа), 짜글로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농민들 가운데서 토지를 양도하고 분배한다.**[74] **토지에 부과되는 의무는 연대부담에 따라 이행한다.**"[75]

물론 법령편찬 소위원회에서 농민공동체 문제가 쉽게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위원회에서는 농민공동체의 성격에 대해 많은 토론과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특히 농민공동체의 토지용익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다. 특히 토지재분배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의 서부나 소러시아 지역 출신의 위원들은 이것이 향후의 자유로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진부한 형태라고 생각하

72) 같은 책, c. 229.

73) Б. Г. Литвак (1972), c. 67.

74) 짜글로(цагло)는 농노제 하에서 지대를 바치는 기본단위로서, 보통은 부부 1쌍의 노동력을 의미한다. 농노제폐지 이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농민(ревизский душа: 남성의 노동력)으로 단위가 바뀌었다.

75) '지방법령 113조' *Документы крестьянской реформы*, c. 278(강조 - 필자).

였다. 그래서 그들은 토지재분배공동체가 이용하는 토지용익방식, 즉 강제적인 토지재분배를 근절하도록 주장하였다. 밀류찐과 소러시아지역 출신인 자블로쯔끼-제샤또프스끼도 개인적으로는 농민공동체의 토지용익 방식보다는 "사적 소유권의 발전과 독립농가(хутор)경영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농촌에서 토지재분배공동체가 지배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결국 그들도 농민에게 농민공동체의 토지용익에서 호별토지용익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제시하면서 농민공동체의 토지소유를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76] 한편, 슬라브주의자들은 원칙적으로 농민공동체의 토지용익 방식에 찬성하는 입장에 섰다. 예를 들어 세묘노프의 회상에 따르면, 사마린은 "슬라브주의자로서, 말할 것도 없이 러시아 민중(народ)에 의해 자주적으로 선택된 농민공동체의 토지용익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는 러시아의 민중은 사적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농민공동체 형태를 강하게 존속시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농민공동체의 토지용익 방식을 주장했으나, 농민공동체의 토지용익 방식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거나 보존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양자의 입장에 대해 법령편찬 소위원회는 타협적 입장에 섰다. 다시 말하자면, 농민공동체의 토지용익 방식을 보존하되, 적어도 개별 농가들의 개별적 토지소유의 가능성을 막지는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후 1861년 법령의 한편에서는 농노제 하에 존재했던 농민공동체를 보존한다는 입장이 진술되었고, 매입금을 완납한 토지를 개별적인 용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을 때 그 문제는 미르의 촌회(сход)에서 정족수의 ⅔의 동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위임한다고 명시되었다.[77]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매입금을 일시에 완납할 것을 촉구하면서 매입금총액을 모두 완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민공동체로부터 탈퇴를 요구할 권리와 가능하면 분여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부여되었던 것이다.[78]

그런데, 법령편찬 소위원회에서 법령안을 만들 당시만 해도 위원들은 "개별농가의 호주들이 일시에 의무를 매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모든 매입 업무가 끝나기 전에 농민의 사적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것

76) П. П. Семенов(1915), т. 3, с. 231.
77) '일반법령 54조', *Документы крестьянской реформы*, с, 48.
78) '지방법령 65조' *Документы крестьянской реформы*, с. 269.

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농민공동체의 토지 용익 방식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비록 할당된 매입금을 모두 갚은 농민이 매입금으로 자신의 모든 의무를 되샀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 매입한 토지는 같은 마을 사람들의 토지의 지조와 완전히 혼재해 있으므로 관습적으로 그 토지의 완전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그리하여 그러한 농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매입금 징수의 연대부담으로부터 그를 제외하는 것인데, 그것은 농민공동체의 경제적 요구에 따라 자주 재분배되고 교체되는 토지와 교환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매입금을 지불한 토지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미르가 재분배를 할 때 그의 토지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호주(домохозяин)에게 그 자신이 매입한 토지를 별도로 떼어내 분리(отруба)하도록 요구하고, 나중에 자신의 사적 소유로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79]

이러한 내용은 「매입에 관한 법령」 165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즉, 매입금을 납부하기 전에, 토지 가운데 일정 면적(участок)을 개별 호주들 사이에서 분배하는 일은 농민공동체의 동의에 따라 허용된다. 그러나 만일에 어떤 호주가 군출납국에 일정한 토지면적에 대해 계산된 매입금을 완전히 갚고 나서 그 토지를 자신에게 별도로 분배해 주기를 원한다면, 공동체는 자체에서 검토한 후에 가능하면 그 농민에게 해당 토지를 별도로 분리시켜 주어야 한다.[80]

1859년 가을, 법령편찬 소위원회가 법령안의 대략적인 원칙을 만들었을 때 지방의 토지귀족들과 중앙의 고위관료들은 법령안에 대해 반대 전선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후 법령안은 1861년 2월 19일 직전까지 국무회의의 수중에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위원들 대다수의 반대를 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알렉산드르 2세가 반론을 채택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크림전쟁의 참패 이후 이미 4년 이상 끌어온 농노제폐지 문제를 탁상머리에서 재고할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특히 농민들 사이에 불안스럽고 조급한 기대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농노제의 폐지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농민봉기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정부진영 안에 팽배했다. 그리하여 많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법령편찬 소위원회의 제안 전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령편찬 소위원회의 법령안에 대한 반대세력은 개혁을 중지시키지는 않지만 토지문제

79) П. П. Семенов(1915), т. 3, с. 232.

80) *Документы крестьянской реформы*, сс. 155-156.

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결국 개별 농촌에서 지주들이 농민의 토지를 축소하려고 했던 다양한 시도들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주귀족위원회 대표들에 의해, 그 다음에는 중앙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과정에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분여지의 총면적(надельный фонд)은 전체적으로 평균 20% 정도 줄어들었으며, 그에 대한 의무는 자연스럽게 인상되었다. 그리고 분여지의 몫을 포기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최대분여지의 1/4에 해당하는 무상토지를 허용하자는 가가린(И. С. Гагарин)의 의견이 포함되었고, 아울러 20년 후에 지가인상을 고려하여 농민의 화폐지대를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5. 결론

이상에서 농노제폐지를 둘러싼 식자층의 토지소유권과 농민공동체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았다. 1861년 농노제폐지는 상당히 가변적인 상황의 산물이었으며, 특히 여러 사회세력 간의 갈등 속에서 변형을 겪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적어도 1857년-1858년의 상황에서 정부의 훈령, 개혁안 등에 나타난 농노제폐지의 목표는 농노의 인신해방과 가옥 및 부속지의 매입에 그치는 것이었다. 반면, 1859년의 법령편찬 소위원회를 통한 법령안 구성작업에서 농노제폐지의 목적은 한편으로 토지귀족의 소유권을 보존하되, 다른 한편으로 농민에게 모든 분여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즉, 가옥 및 부속지의 의무적 매입, 여타의 분여지의 상호동의에 의한 매입) 가까운 미래에 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데 있었다. 물론 1859년 가을이후 최종적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법령편찬 소위원회의 법령안은 그 의미가 상당히 축소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법령안은 지주와 농민층에 심각한 변화를 주지 않는 동시에 새로운 법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던 법령편찬 소위원회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반영하는 것이었다. 법령편찬 소위원회의 소박한 생각은 1861년 법령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지주의 토지소유권의 보장과 동시에 농민의 토지매입권 허용, 49년으로 늘어난 장기의 매입기간, 임시의무농민의 고려, 농민공동체의 보존 등과 같은 농업개혁의 기본 원칙들이 모두 그러한 생각을 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민공동체의 보존은 법령편찬 소위원회의 개혁관료들이 농업개혁의 수행에서 의도한 두 가지 측면을 잘 보여준다. 즉, 위원회는 지주경영 및 소농경

영과 같은 농업경영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농민반란과 같은 정치·사회적 위기를 피하게 해줄 수 있는 사회안정의 요소를 고려했던 것이다.

요컨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식자층 사이에서 나타난 농민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교육받은 계층은 대부분 서유럽으로부터 상당히 다양한 경제이론과 사상을 받아들였으나 그것은 러시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과 사적 소유권, 존 로크의 정치적 자유는 오히려 토지귀족의 토지소유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그쳤고 농노제폐지 당시에도 그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 법령편찬 소위원회의 위원들은 법령안을 구성하면서, 끊임없이 외국의 사례들을 연구하였다. 프랑스혁명 시기에 나타났던 농민의 되사기 방안, 프로이센의 개혁의 경우처럼 지주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안, 영국의 엔클로우저 정책의 결과 등을 예의 주시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특히 1858년 봄의 에스토니아 농민반란과 같은 사회안정을 뒤흔드는 문제에 봉착하면 무엇보다도 러시아 정치현실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중시되었다. 왜냐하면 농민은 언제나 후진적이라 여겨졌고, 통제나 후견이 아니면 항상 사회안정을 해치는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농민공동체가 갖고 있는 경제적 한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농민공동체와 연결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정치사회적 통제문제가 경제적 생산성이라는 문제보다 최우선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Дружнин, Н. М.(1968) "Ликвидация феодальной системы в русской помещичьей деревне, 1862-1882,"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no. 12, сс. 3-34.

_____(1978) *Русская деревня на переломе 1861-1880 гг.* Москва.

Дудзинская, Е. А.(1983) *Славянофилы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борьбе*, Москва.

Зайончковский, П. А.(1961) "Советская историография реформы 1861 г.,"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no. 2, сс. 85-104.

_____(1968) *Отмена крепостного права в России. 3-е*, Москва.

Захарова, Л. Г.(1983а) "Редакционные комиссии 1859-1860 гг.:учрежд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ь (к проблеме кризиса 'верхов' накануне падения крепостного права в России)," *История СССР*, no. 3, сс. 53-71.

_____(1983б) "Записка Н. А. Милютина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крестьян,"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России XIX-начала XX века*, Л.

_____(1984) *Самодержавие и отмена крепостного права в России 1856-1861*, Москва.

_____(1991) "Самодержавие и реформы 1861-1874 гг.,"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Люди, идей, решения. Россия на переломе*, Москва, сс. 293-325.

Кащенко, С. Г.(1990) *Реформа 19 февраля 1861 год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губернии*, Ленинград.

Койстинен, Г. С.(1953) *Проведение крестьянской реформы 1861 года в Петербургской губернии*, Дисс. канд. ист. наук, Ленинград.

Козаченко, В. И.(1980) *Классовая борьба в России в послереформенный период*, Ленинград.

Литвак, Б. Г.(1989) *Крестьянское движение в России в 1775-1904 гг: История и методика изучения источников*, Москва.

_____(1991) "Реформы и революции в России," *История СССР*, No. 2, сс. 85-95.

Миронов, Б. И.(1994)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и образование в России в XIX-XX в.," *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vol. 4-5, сс. 111-125.

Нечкина, М. В. ред.(1960-1979) *Революционная ситуация в России в 1859-1861*

гг. в 8 томах, Москва.

Рындзюнский, П. Г.(1977) "Российское самодержавие и его классовые основы (1861-1904 гг.)," *История СССР*, no. 2, сс. 34-52.

Федоров, В. А.(1980) *Крестьянское движение в центральной России 1800-1860*, Москва.

Чернышевский, Н. Г.(1948) *Избран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т. 2, Москва.

Bohac, R. D.(1988) "The Mir and the Military Draft," *Slavic Review*, vol. 47, no. 4, pp. 652-666.

Emmons, T.(1968) *The Russian Landed Gentry and the Peasant Emancipation of 1861*, Cambridge.

_____(1970) *Emancipation of the Russian Serfs*, Stanford.

Field, D.(1976) *The End of Serfdom: Nobility and Bureaucracy in Russia, 1855-1861*, Cambridge, Mass.

Hoch, Stephen.(1986) *Serfdom and Social Control in Russia: Petrovskoe, a Village in Tambov*, Chicago & L.

Kingston-Mann, E(1991) "In The Light and Shadow of the West: The Impact of Western Economics in Pre-Emancipation Russia," *Comparative Study of Society and History*, vol. 33, no. 1,

Kingston-Mann E. & Mixter T. ed.(1991) *Peasant Economy, Culture, and Politics of European Russia, 1800-1921*, Princeton.

Kingston-Mann, E.(1999) *In Search of the True West: Culture, Economies, and Problems of Russian Development*, Princeton.

LeDonne, J. P.(1974) "Criminal Investigations before the Great Reforms," *Russian History*, vol. 1, pt 2, pp. 101-118.

Lincoln, W. B.(1980) *Petr Petrovich Semenov-Tian-Shanskii: the Life of a Russian Geographer*, Newtonville, MA.

_____(1982) *In the Vanguard of Reform: Russia's Enlightened Bureaucrats 1825-1861*, DeKalb, IL.

Paperno, I.(1991) "The Liberation of the Serfs as a Cultural Symbol," *Russian Review*, vol. 51, pp. 417-436.

Pearson, Thomas S.(1989) *Russian Officialdom in Crisis: Autocracy and Local Self-Government, 1861-1900*, Cambridge.

Perrie, M. P.(1989) "Folklore as Evidence of Peasant Mentalite: Social Attitudes and Values in Russian Popular Culture," *Russian Review*, vol. 48, no. 2, pp. 119-143.

Robinson, G. T.(1957) *Rural Russia Under the Old Regime: A History of the Landlord-Peasant World and Prologue to the Peasant Revolution of 1917*, New York.

Shanin, T. ed.(1988) *Peasants and Peasant Societies: Selected Readings*, Harmondsworth.

Viise, M. R.(2000) "Filaret Drozdov and the Language of Official Proclamations in Nineteenth-Century Russia," *Slavonic and East European Journal*, vol. 44, no. 4, pp. 553-582.

Vucinich, Wayne S. ed.(1968) *The Peasant in Nineteenth-Century Russia*, Stanford.

Worobec C. D.(1991) *Peasant Russia: Family and Community in the Post-Emancipation Period*, Princeton.

Yaney, George L.(1982) *The Urge to Mobilize: Agrarian Reform in Russia, 1861-1930*, Urbana.

Abstract

Discourses on Property Rights and Village Commune prior to the Abolition of Serfdom in Russia

Ki, Kye-Hyeong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discourses on property rights and village commune prior to the Abolition of Serfdom of 1861. It focuses on the discourses of the educated elite including economists, officials, and landowners on the grants of property rights and village commune to the peasants. The economists were eager to accept theories and ideas of property rights,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prosperity from western countries. For them, the modern economic theories and ideas to promote the accumulation of wealth and to increase productivity could be introduced without ever calling into question the most traditional forms of power and privilege. Therefore, if introduced, the western theories and ideas tended to be revamped and transformed into those of limited meaning in Russia.

This circumstances were not quite different in the case of liberal officials, social reformers, agricultural experts, and scholars that drafted the Statue of 1861. Examining the cases of the western countries, the liberal members of the editorial commission energetically tried to find the models of agrarian reform. They inspected the occasion of the French revolution in that the peasants were benefitted from land indemnification, and scrutinized the Prussian reform favorable to the gentry. But they did not want to destroy "existing realities," and attempted to domesticate the notions of property rights and formulate a new concept that would strengthen rather than undermine the power of the landed gentry and the state. Because of considering domestic security, their arguments for 'privatization' did not extend rights of freedom of actions to the peasants.

Although agreeing that it was necessary to give the peasants full property rights, they left contradictory resolutions, that is, the limited private property of land and village communal property to the peasants.

The discourses on property rights and village commune of economists and officials reflected their traditional attitudes toward peasants. For them, peasants were not an actor but an object. They argued that the considerable backwardness of peasants in the communal institutions and possible instability of the peasant actions forced them to have no choice but to impose an indefinite and exceedingly long-term program of guidance, supervision, and control. In this context, both the communal property and grants of private property to the peasantry that seemed contradictory in nature were established for the interests of domestic security.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5. 10. 7
논문심사일: 2005. 10. 17 ~2005. 11. 13
심사완료일: 2005. 11. 22